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0
------------	------

2021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1일, 성흠제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단

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코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함(안 제9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성흠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80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학교시설사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는 전국에서 6,395가문이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는 1,198가문이 선정되었습니다.

[표-1]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구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04년
가 문	전 국	6,395	1,017	741	714	492	560	466	497	545	301	1,062
	서 울	1,198	187	157	138	82	95	83	100	91	69	196

-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들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표-2]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현황

소관위원회	조례안	혜택
교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요금 20% 감면
문화체육관광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람료 면제
문화체육관광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람료 면제

- 동 개정조례안 또한 병역명문가 단체의 학교시설사용료 감면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예우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 아울러 사용료 등의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정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¹⁾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에 대한 감면율은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 단체, 독립유공자 단체와 동일한 수준인 사용료의 50%로써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²⁾
-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136, 2021.4.1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1)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전액면제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60 감면

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마.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 자격검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라목과 마목의 목 번호를 각각 마목과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 ----- ---
1. ~ 2. (생략)	1. ~ 2. (생략)
3. 100분의 50 감면	3.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가. ----- ----- ----- ---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 -----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 ----- -----
<u><신 설></u>	<u>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u>
<u>라.</u>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u>마.</u> ----- -----
<u>마.</u>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u>바.</u> ----- ----- -----
4. (생략)	4. (생략)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